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김승수 · 김선교 · 안철수
조승환 · 이현승 · 박성훈
강대식 · 김정재 · 김미애
조지연 · 고동진 · 강명구
최은석 · 김은혜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(이하 “음악영상물등”이라 함)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 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음.

이에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

를」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회 이상의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(안 제17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158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내용에 관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”를 “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전체이용가: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
2. 12세 이상 이용가: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
3. 15세 이상 이용가: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
4. 청소년이용불가: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

② 제1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

관한 사항

2.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
3.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
4.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
5.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·선정성·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
6.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,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
관한 사항

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등급분류 시 준수사항)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
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는 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
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기준
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
2.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25조제2항
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등을 표시하고 이를 「영화 및 비디오물
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(이하 “영
상물등급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할 것
3.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
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
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
4.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

를 것

5.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

제17조의3(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간 직권등급재분류결정(다만,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 2. 제17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4(직권등급재분류 등)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가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(이하 “직권등급재분류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-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한 경

우 이를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·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직권등급재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.

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·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 및 제공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이유 없음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의 절차, 결정통지, 이의신청, 시정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5(준용규정) 음악영상물·음악영상파일의 판매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 및 자료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1조·제53조

- 제53조의2· 제5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상물· 음악영상파일”로, “온라인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상파일”로 본다.

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 규정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- ②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, 배급 또는 제공(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, 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제4호,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이용에 공급한 자
2.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
3.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제3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등급분류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가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등급분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중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)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<u>내용에 관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17조(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을 분류하여야</u> -----. <u>1. 전체이용가: 모든 연령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</u> <u>2. 12세 이상 이용가: 12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</u> <u>3. 15세 이상 이용가: 15세 이상의 사람이 시청할 수 있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</u> <u>4. 청소년이용불가: 청소년은 시청할 수 없는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</u> <u>② 제1항 각 호의 등급에 대한</u>
<u>② 음악영상물 · 음악영상파일</u>	

의 등급분류 및 판매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와 관련하여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50조·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·제51조부터 제56조까지·제65조·제66조·제95조제5호부터제7호까지·제97조·제98조제1항제3호의2·제4호부터 제6호까지·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상물·음악영상파일”로, “온라인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상파일”로 본다.

<신 설>

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「대한민국헌법」에 따른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 존중에 관한 사항
2.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
3. 사회윤리의 존중에 관한 사항
4.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
5. 주제 및 내용의 폭력성·선정성·반사회적 행위 등에 관한 사항
6. 인간의 보편적 존엄과 사회적 가치, 선량한 풍속 및 국민정서에 관한 사항

제17조의2(등급분류 시 준수사항)
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는 등급분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제17조제2항에 따른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의 등급

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
등급분류를 할 것

2.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
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25
조제2항에 따라 등급과 내용
정보등을 표시하고 이를 「영
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
한 법률」 제71조에 따른 영
상물등급위원회(이하 “영상물
등급위원회”라 한다)에 통보
할 것

3.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
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
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
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
요한 교육을 받을 것

4.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
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
에 따를 것

5.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
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
것

제17조의3(자체등급분류 금지 명

<신 설>

령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하는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등급분류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.

1. 최근 3년간 직권등급재분류 결정(다만,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)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2. 제17조의2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금지 명령에

<신 설>

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의4(직권등급재분류 등) ①

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가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(이하 “직권등급재분류”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·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직권등급재분류 결정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④ 직권등급재분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.

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4항

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급분류를 다시 하고 이를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유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·배급(수입을 포함한다) 및 제공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이유 없음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권등급재분류의 절차, 결정통지, 이의신청, 시정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제17조의5(준용규정) 음악영상물·음악영상파일의 판매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

제25조(표시의무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벌칙) ①·② (생략)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제공행위를 포함한다) 및 자료
제출의 요청 등과 관련하여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
관한 법률」 제51조·제53조·
제53조의2·제56조를 준용한다.
이 경우 “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
상물·음악영상파일”로, “온라
인비디오물”을 “음악영상파일”
로 본다.

제25조(표시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, 배급 또는 제공(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제공행위를 포함한다)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-

-----.

제34조(벌칙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에 처한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1. · 2.</u> (생 략) <u>2의2.</u> (생 략) <u>3. · 4.</u> (생 략) <u>④ · ⑤</u> (생 략) 제3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②</u> (생 략)	-----. <u>1.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이용에 공급한 자</u> <u>2.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</u> <u>3. 제17조의4제6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 <u>4. · 5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) <u>6.</u> (현행 제2호의2와 같음) <u>7. · 8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 <u>④ · ⑤</u> (현행과 같음) 제36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한 자</u> <u>②</u> (현행과 같음)
--	--